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를 위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마련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2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2217423)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를 위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마련(안 제50조 제1항)	2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22174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를 위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마련 (안 제50조제1항)

개정안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때,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u>도로의 구조 및 시설(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한다)</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50조¹⁾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을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하고, 구체적인 도로의 구조 및 도로안전시설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0cm를 표준으로 하되, 디자인, 미관, 경제성을 고려하여 110~120cm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관련 내용 발췌 >

2. 방호울타리

2.2.4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

1)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 이의 설치는 도로·교통 조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3] 차량방호안전시설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0 cm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높이는 노면(보도가 있는 경우는 보도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그러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를 디자인, 미관, 경제성을 고려하여 110~120 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24년 서울특별시 내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출동건수²⁾는 1,272건으로 2022년 1,000건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³⁾이고, 마포대교 등 일부 교량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마련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방지를 위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도로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교량에서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교량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2) 한강 교량에서 투신했거나 투신 우려 등의 사유로 신고 접수되어 출동한 건수

3) 변완영, “한강 교량 자살 시도 4년 연속 1천건 여전”, 국토교통뉴스, 2026년 4월 20일자.(최종 검색일 : 2026년 4월 28일)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포대교 등에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은 202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적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임.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교량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방호울타리 등도 법령이 아닌 국토교통부예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에 대한 법령 규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임.

다만,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난간 등의 시설 뿐만 아니라 조명시설, 폐쇄회로카메라의 설치 및 구조물품 비치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도로 시설의 설치에 자살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⁵⁾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로 마포대교 등 서울특별시 내 교량에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조명시설, CCTV 등과 함께 설치·운영중임.

또한, 도로의 구체적인 구조 및 시설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예규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을 법률에서 특정하는 것이 현행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운영중에 있음.

또한, 투신 예방시설 설치시 운전자의 시거 장애 및 추가 하중에 따른 교량안전성 문제가 우려됨.

아울러, 투신 등 자살의 목적을 갖는 의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인 「도로법」에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자살발생 빈도와 무관한 모든 교량에 대한 보편적 설치기준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자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장소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필요한 조치(안전난간, 조명시설, 폐쇄회로 카메라, 구조물품 보관함 설치 등)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82